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제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2005. 2. 2)

1. 심사 경과

가. 2005. 1. 5 : 사천시장제출

나. 2005. 1. 26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2005-1호)

다. 2005. 2. 2 : 제93회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세무과장 강대평)

가. 제안 이유

○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반복되는 문장으로 조문에 혼란을 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등

2) 배우자와 장애인이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것으로서

○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

- 제2조는 조문내용 중 반복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줄여서 표기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하므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제3조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되었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제12조는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간결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